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)

[시행 2025. 1. 31.] [대통령령 제35228호, 2025. 1. 21., 타법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

제2조(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)

제3조(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)

제4조(변경허가 등)

제5조(특수관계자의 범위)

제6조(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)

제7조(재허가)

제8조(허가의 취소 등)

제9조(소유제한의 범위)

제10조(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)

제10조의2(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)

제11조(방송광고 수수료)

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

제12조(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)

제13조(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

제14조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)

제15조(지사등의 설치등기)

제16조(이전등기)

제17조(변경등기)

제18조(등기기간의 기산)

제19조(「비송사건절차법」의 준용)

제5장 보칙

제20조(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)

제21조(감독)

제22조(과징금 부과기준 등)

제2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제22조의3(규제의 재검토)

제6장 벌칙

제2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)



[시행 2025. 1. 31.] [대통령령 제35228호, 2025. 1. 21., 타법개정]

방송통신위원회 (방송광고정책과) 02-2110-1275 방송통신위원회 (방송시장조사과 - 금지행위 관련) 02-2138-152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

- **제2조(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)**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.
 -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주인 방송광고
 - 2. 지상파방송사업자,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"방송사업자"라 한다)의 사업이나 자체 행사를 소개하는 방송광고
 - 3.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광고
- **제3조(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)**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(이하 "광고판매대행사업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법인(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정관
 - 2.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
 - 3. 사업계획서
 - 4.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(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 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
 - 5.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서
 - 6.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 -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설립 예정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 · 공정성 및 실현가능성
 - 가.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, 방송광고판매시장 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
 - 나.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등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
 - 2.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,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(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
 - 가. 법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
 - 나. 방송사업자 간 광고매출 배분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
 - 다.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의 광고판매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
 - 3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가.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
- 나. 인력운영 계획이 방송광고 판매의 전문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할 것
- 다.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것
- 4.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
 - 가. 자본금의 규모 및 조달방법 등이 적정할 것
 - 나. 신청 법인과 주요 출자자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것
- 5.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: 광고 표준화, 광고효과 측정, 광고 관련 조사·연구, 공익광고 제작·방영 등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일 것
- 6.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: 광고판매대행사업 개시 시기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적정할 것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관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- **제4조(변경허가 등)**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합병・분할의 당사자 또는 양도인・양수인의 정관 및 사업 현황
 - 2. 합병·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, 합병·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양도인·양수인의 주식 및 지분의 소유에 관한 서류
 - 3. 합병・분할 또는 양도・양수 후의 사업계획서
 - 4. 합병・분할 또는 양도・양수 후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(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
 - 5.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서
 - 6. 합병・분할 또는 양도・양수 계약서 사본
 - 7.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 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변경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 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- **제5조(특수관계자의 범위)**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"와 법 제1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"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(이하 "특수관계자"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21, 12, 28,>
 - 1.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,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
 - 나.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(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 및 그 임원(이사·감사·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
 - 다.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이나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임원
 - 나. 계열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 및 그 임원
 - 다.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, 법인 및 그 임원
 - 라.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
- ② 제1항에서 "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"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- 1.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: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
- 2. 제1항제1호다목의 경우: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가목이나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
- 3.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: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
- 4.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: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
- 5.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과 자금·자산·상품·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(資金貸借)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우
-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"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"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1.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아닌 자로서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
- 2. 주주 또는 지분권자로서 다른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자(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
- 3. 대표이사나 임원의 임면(任免) 또는 영업의 양도・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
- **제6조(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)**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27.>
 - 1. 최다액 출자자(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되려는 자
 - 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
 - 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
 - 2.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
 - 가.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
 - 나.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
 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에 관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- **제7조(재허가)**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(이하 "광고판매대행자"라 한다)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, 전자메일, 팩스, 전화,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.
 -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광고판대대행자는 재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재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재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허가에 관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8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처분 사유 및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제9조(소유제한의 범위) 법 제13조제3항에서 "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"이란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 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28.>
- 제10조(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)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제10조의2(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 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・서류, 전산자료・음성녹음자료・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되, 15일이상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.
 - 1.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
 - 2. 제출요청 사유
 - 3. 자료를 제출할 자
 - 4. 제출할 서류, 물건 등 자료
 - 5. 제출기한과 장소
 - 6. 제출방식
 - 7.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
 - 8.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 내용 및 해당 제재의 근거 법령 조항
 - 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제출기한까지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11조(방송광고 수수료)**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(이하 "수탁수수료"라 한다)를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24.>
 - 1.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: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6 이하. 다만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8 이하로 한다.
 - 2.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: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9 이하
 -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(이하 "광고대행자"라 한다)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,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95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

- **제12조(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)**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 - 1.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성격 및 방송광고 매출규모
 - 2.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규모
 - 3.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규모
 -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 광고판매대 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 광고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3조(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 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이 경우 법 제23조제 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 -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 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

- **제14조(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)**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설립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공사의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4.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
 - 5. 자본금
 - 6. 출자의 방법
 - 7. 사장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- 8.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
 - 9. 공고의 방법
 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 정관
 - 2. 법률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
 - 3.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 - ③ 삭제<2025. 1. 21.>
 -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- **제15조(지사등의 설치등기)**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(이하 "지사등"이라 한다)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,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5. 1. 21.]

- **제16조(이전등기)**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
 - ② 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
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.

[전문개정 2025. 1. 21.]

제17조(변경등기)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(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5. 1. 21.]

- 제18조(등기기간의 기산)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・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・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(起算)한다.
- 제19조(「비송사건절차법」의 준용)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비송사건절차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점"은 "지사 또는 사무소"로 본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장 보칙

- 제20조(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의 설립을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방송광고 관련 홍보활동
 - 2. 국내외 방송광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
 - 3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- 제21조(감독)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
 - 2. 해당 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
 - 3. 그 밖에 효율적인 협회 감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제22조(과징금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-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<개정 2023, 12, 12.>
 -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 - ⑤ 삭제<2021. 9. 24.>
 -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
- 제2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 8. 6.]

[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<2014. 8. 6.>]

제22조의3(규제의 재검토) 방송통신위원회는 수탁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4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3. 24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 <2014. 8. 6.>]

제6장 벌칙

제2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부칙 <제35228호,2025. 1. 21.>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별표 1]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[별표 2]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(제10조 관련)

[별표 3]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

[별표 4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